



의안번호	제 2012 - 20 호
보 고 연 월 일	2012. 8. 20. (제43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1. 사건 접수	1
2. 처리 현황	15
II. 조세, 방화,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결과 분석	28
1. 개요	28
2. 분석 대상	28
3. 분석의 의의	28
4. 분석 내용	28
III. 위원장 국회 현황 보고	29
1. 개요	29
2. 주요 보고내용	29
IV.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30
V.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결과 보고	31
1. 공청회 개요	31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31
VI.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32

1. 개요	32
2. 추진 경과	32
VII.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33
1. 개요	33
2.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회신의견 종합	33
VIII. 선거범죄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54
1. 개요	54
2. 관련 규정	54
3. 공개 방법	55
4. 추진 일정	55
IX. 양형위원, 전문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56
1. 양형위원 개임	56
2. 신임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56
3. 전문위원 개임	56
4.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58
X. 2012년도 양형위원회 제2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59
1. 개요	59
2. 참석 현황	59
3. 회의 내용	59
4. 자문의견 요약	60
5. 향후 계획	62

XI. 2011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63
1. 개요	63
2. 추진 경과	63
3. 제작 내역	63
4. 국회 보고	63
5. 기타 기관 배부	64
XII. 2012 양형기준 책자 발간	65
1. 개요	65
2. 추진 경과	65
3. 제작 내역	65
4. 국회 보고	65
5. 기타 기관 배부	65
XII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67
1. 개요	67
2. 추진 경과	67
XI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68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68
2. 서면질의 및 회신	68
3. 정보공개 청구 및 회신	70
□ 별지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 별첨1	관보 게재용 양형기준
□ 별첨2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I. 양형기준 시행 관련 보고

1. 사건 접수

○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2. 6. 30.)와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2. 6. 30.)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기간 동안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단일범 내지 동종 경합범

(1) 제1기 대상범죄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살인 범죄	강간살인	0	0	0	1	1
	강도살인	0	0	7	4	11
	강도살인미수	0	0	5	4	9
	살인	125	219	166	115	625
	살인미수	188	324	316	137	96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0	3	0	3
	존속살해	10	16	26	14	66
	존속살해미수	6	14	13	4	37
	전체	329	573	536	279	1,717
뇌물 범죄	뇌물공여	248	526	351	178	1,303
	뇌물수수	139	323	280	190	932
	부정처사후수뢰	8	11	6	4	29
	수뢰후부정처사	4	15	7	4	30
	제3자뇌물교부	10	31	22	3	66
	제3자뇌물취득	3	22	33	8	66
	특가법(뇌물)	34	75	80	57	246
	전체	446	1,003	779	444	2,672
	강간	37	86	83	52	258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성 범 죄	강간살인	1	0	0	0	1
	강간상해	46	121	108	48	323
	강간치사	0	1	0	1	2
	강간치상	142	255	199	74	670
	강도강간	6	3	5	2	16
	강제추행	282	631	795	501	2,209
	강제추행상해	13	29	31	8	81
	강제추행치상	53	83	83	38	257
	미성년자의제강간	6	13	9	6	3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1	2	0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2	22	14	1	5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0	1
	상습강제추행	0	0	1	2	3
	상습준강제추행	0	0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94	164	29	10	397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2	1	1	0	4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3	41	5	0	89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59	38	2	1	100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58	54	24	6	142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8	7	4	1	20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17	60	18	6	20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1	17	4	0	4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8	33	8	1	7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4	6	0	0	1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	5	2	2	14
	성폭력범죄(특수강간)	122	104	28	11	265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1	21	16	11	79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0	8	1	0	19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28	47	7	3	85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0	2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185	271	63	51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0	0	47	47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48	67	35	150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61	112	25	19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0	0	0	7	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0	0	0	10	10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52	109	41	202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5	3	6	14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132	172	53	357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6	26	6	38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23	45	19	87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5	2	7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4	5	4	1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103	206	50	35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13	29	9	5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4	21	19	4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40	99	24	16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0	5	1	6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550	765	320	1,635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0	0	0	29	29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0	0	0	2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0	0	0	12	12
	준강간	27	84	70	32	213
	준강간치상	3	8	14	5	30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준강제추행	64	139	147	89	439
	준강제추행상해	0	0	0	1	1
	준강제추행치사	0	0	1	0	1
	준강제추행치상	2	0	6	1	9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227	61	0	0	288
	전체	1,661	3,371	3,659	1,697	10,388
강도 범죄	강도	41	64	60	19	184
	강도살인	6	6	1	0	13
	강도상해	251	333	256	127	967
	강도치사	0	4	1	0	5
	강도치상	16	15	28	4	63
	준강도	37	42	37	17	133
	준특수강도	5	7	5	1	18
	특가법(강도)	5	4	4	0	13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2	3	2	9
	특수강도	146	233	233	133	745
	전체	509	710	628	303	2,150
횡령 · 배임 범죄	배임	342	437	350	148	1,277
	업무상배임	167	332	274	149	922
	업무상횡령	1,132	1,869	1,664	810	5,475
	특경가법(배임)	90	162	197	84	533
	특경가법(횡령)	100	246	265	92	703
	횡령	1,148	1,738	1,573	705	5,164
	전체	2,979	4,784	4,323	1,988	14,074
위증 범죄	모해위증	8	12	10	10	40
	모해위증교사	0	0	0	1	1
	위증	811	1,300	1,011	470	3,592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위증교사	50	198	155	64	467
	전체	869	1,510	1,176	545	4,100
무고 범죄	무고	966	1,620	1,424	516	4,526
	무고교사	0	0	0	2	2
	특가법(무고)	5	3	2	1	11
	전체	971	1,623	1,426	519	4,539
총 계		7,764	13,574	12,527	5,775	39,640

(2) 제2기 대상범죄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전체
약취·유인 범죄	미성년자약취	3	2	5
	미성년자유인	1	1	2
	특가법(약취·유인)	1	3	4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3	4	7
	전체	8	10	18
사기 범죄	사기	12,962	11,848	24,810
	상습사기	45	34	79
	준사기	11	4	15
	컴퓨터등사용사기	37	92	129
	특경가법(사기)	222	238	460
	전체	13,277	12,216	25,493
절도 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8	5	13
	산림보호법위반	25	22	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57	64	121
	상습절도	1	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54	142	296
	야간방실침입절도	17	14	31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전체
	야간선박침입절도	2	0	2
	야간주거침입절도	140	83	223
	절도	2,070	2,192	4,262
	특가법(산림)	23	4	27
	특가법(절도)	799	819	1,618
	특수절도	1,040	1,109	2,149
	전체	4,336	4,454	8,790
공 문 서 범 죄	공문서변조	4	1	5
	공문서부정행사	18	53	71
	공문서위조	19	18	3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0	2	2
	공전자기록등위작	1	1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1	2
	면허증불실기재	0	1	1
	변조공문서행사	2	0	2
	위조공문서행사	6	5	11
	허위공문서작성	2	0	2
	전체	53	82	135
사 문 서 범 죄	변조사문서행사	1	1	2
	사문서변조	1	6	7
	사문서부정행사	1	2	3
	사문서위조	13	26	39
	사전자기록등위작	1	0	1
	위조사문서행사	11	11	2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1	2
	허위진단서작성	0	3	3
	전체	29	50	79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전체
공 무 집 행 방 해 범 죄	공무집행방해	1,147	1,374	2,521
	공용물건무효	1	1	2
	공용물건손상	103	145	248
	공용물건은닉	1	0	1
	공용서류무효	1	0	1
	공용서류손상	10	11	21
	공용서류은닉	0	1	1
	위계공무집행방해	56	86	142
	특수공무집행방해	51	89	14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7	31	58
	특수공용물건손상	2	3	5
	전체	1,399	1,741	3,140
식 품 · 보 건 범 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36	29	65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9	2	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253	231	48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117	107	224
	식품위생법위반	686	541	1,227
	약사법위반	110	140	250
	의료법위반	479	281	760
	의료법위반교사	0	1	1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2	1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31	32	63
	화장품법위반	9	12	21
	전체	1,732	1,377	3,109
마 약 범 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45	200	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26	12	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455	1,349	2,804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전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56	168	324
	특가법(마약)	0	1	1
	특가법(향정)	0	1	1
	전체	1,882	1,731	3,613
	총계	22,716	21,661	44,377

나. 이중경합범(8개 범죄가 대표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살인 범죄	강간살인	0	0	2	0	2
	강도살인	0	0	9	4	13
	강도살인미수	0	0	4	1	5
	살인	59	117	107	38	321
	살인미수	81	110	106	35	33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0	8	1	9
	존속살해	10	7	9	1	27
	존속살해미수	1	3	4	2	10
	전체	151	237	249	82	719
뇌물 범죄	뇌물공여	61	219	206	66	552
	뇌물수수	29	135	125	57	346
	부정처사후수뢰	4	21	11	8	44
	수뢰후부정처사	6	25	14	1	46
	제3자뇌물교부	4	21	9	2	36
	제3자뇌물취득	1	14	17	5	37
	특가법(뇌물)	23	66	46	19	154
	전체	128	501	428	158	1,215
	강간	61	109	119	52	341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성 범 죄	강간살인	1	2	1	0	4
	강간상해	45	68	66	29	208
	강간치사	0	1	0	0	1
	강간치상	56	87	76	35	254
	강도강간	14	14	6	7	41
	강제추행	145	320	430	135	1,030
	강제추행상해	4	8	15	5	32
	강제추행치상	22	51	27	7	107
	미성년자의제강간	2	9	4	5	2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2	2	0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	6	9	2	1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0	1
	상습준강제추행	0	0	0	1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5	111	43	9	228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3	4	0	0	7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30	31	4	1	66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47	32	2	3	84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8	9	7	0	24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8	7	2	2	19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70	56	18	0	144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5	32	10	3	7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7	27	26	1	7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4	1	1	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	12	8	0	22
	성폭력범죄(특수강간)	84	80	22	3	189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100	68	21	6	195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3	10	3	0	26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21	16	2	0	3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75	99	24	198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0	0	17	1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0	0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35	65	28	128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31	53	22	10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0	0	0	11	1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0	0	0	3	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12	28	12	52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7	10	2	19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58	92	31	18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27	44	25	9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14	26	13	5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6	1	7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1	4	7	1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82	151	57	29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59	94	19	17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12	29	7	4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11	40	3	5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1	3	0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235	312	88	635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0	0	0	9	9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0	0	0	4	4
	준강간	11	27	23	8	69
	준강간치상	1	6	1	0	8
	준강제추행	11	26	23	6	66
	준강제추행상해	0	0	0	1	1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준강제추행치상	1	1	1	0	3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78	28	0	0	106
	특가법(강도강간)	0	0	1	0	1
	전체	948	1,924	2,030	706	5,608
강도 범죄	강도	62	90	80	44	276
	강도살인	15	30	9	0	54
	강도상해	233	357	321	151	1,062
	강도치사	1	4	4	0	9
	강도치상	16	32	25	11	84
	준강도	20	48	60	4	132
	준특수강도	2	9	5	5	21
	특가법(강도)	3	8	6	2	19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	7	10	6	27
	특강법(특수강도)	2	0	0	0	2
	특수강도	176	321	372	88	957
	전체	534	906	892	311	2,643
횡령 · 배임 범죄	배임	34	145	87	40	306
	업무상배임	114	318	300	92	824
	업무상횡령	388	915	712	164	2,179
	특경가법(배임)	60	171	213	52	496
	특경가법(횡령)	95	267	257	50	669
	횡령	286	836	522	53	1,697
	전체	977	2,652	2,091	451	6,171
위증 범죄	모해위증	4	6	3	3	16
	위증	51	108	87	22	268
	위증교사	0	31	18	3	52
	전체	55	145	108	28	336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무고 범죄	무고	177	461	427	136	1,201
	특가법(무고)	1	4	4	2	11
	전체	178	465	431	138	1,212
총계		2,971	6,830	6,229	1,874	17,904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전체
약취·유인 범죄	미성년자약취	5	6	11
	미성년자유인	3	8	11
	영리유인	1	0	1
	추행유인	1	0	1
	특가법(약취·유인)	4	4	8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21	15	36
	전체	35	33	68
사기 범죄	사기	4,637	3,735	8,372
	상습사기	30	16	46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1	0	1
	준사기	4	1	5
	컴퓨터등사용사기	90	79	169
	특경가법(사기)	304	110	414
	전체	5,066	3,941	9,007
절도 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7	9	16
	산림보호법위반	4	7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52	31	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41	125	266
	야간방실침입절도	18	8	26
	야간주거침입절도	114	65	179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전체
	절도	1,274	940	2,214
	특가법(산림)	18	3	21
	특가법(절도)	321	141	462
	특수절도	771	500	1,271
	전체	2,720	1,829	4,549
공 문 서 범 죄	공문서변조	32	53	85
	공문서부정행사	159	208	367
	공문서위조	138	172	31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70	314	584
	공전자기록등위작	5	9	1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68	98	166
	면허증불실기재	0	6	6
	변조공문서행사	8	2	10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34	0	3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	1	21
	불실기재여권행사	0	4	4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	0	2
	위조공문서행사	23	7	30
	허위공문서작성	27	18	45
	허위작성공문서행사	8	0	8
	전체	794	892	1,686
사 문 서 범 죄	변조사문서행사	24	60	84
	사문서변조	40	14	54
	사문서부정행사	2	2	4
	사문서위조	684	680	1,364
	사전자기기록등변작	4	4	8
	사전자기기록등위작	16	7	23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전체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	0	2
	위조사문서행사	131	9	14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4	29	5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7	0	7
	허위작성진단서행사	2	0	2
	허위진단서작성	8	1	9
	전체	944	806	1,750
공 무 집 행 방 해 범 죄	공무집행방해	1,783	1,107	2,890
	공용물건무효	0	1	1
	공용물건손상	233	161	394
	공용서류무효	3	2	5
	공용서류손상	21	14	35
	공용서류은닉	2	0	2
	공용전자기록등손상	0	3	3
	위계공무집행방해	67	46	113
	특수공무집행방해	87	74	1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80	24	104
	특수공용물건손상	4	2	6
	전체	2,280	1,434	3,714
식 품 · 보 건 범 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2	20	22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3	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6	15	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22	11	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4	0	4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1	2
	식품위생법위반	102	56	158
	약사법위반	51	26	77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전체
	의료법위반	41	17	5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4	1	5
	전체	244	150	394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30	120	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5	3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10	131	34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52	26	78
	특가법(향정)	5	4	9
	전체	302	284	586
총계		12,385	9,369	21,754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이후)와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이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2012. 6. 30. 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범죄군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처리기간	범죄군	수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09년	살인범죄	수	286	0	0	286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하반기	뇌물범죄	비율	100.0%	0.0%	0.0%	100.0%
		수	46	73	1	120
	성범죄	비율	38.3%	60.8%	0.8%	100.0%
		수	960	96	60	1,116
	강도범죄	비율	86.0%	8.6%	5.4%	100.0%
		수	563	1	0	564
	횡령·배임범죄	비율	99.8%	0.2%	0.0%	100.0%
		수	101	990	286	1,377
	위증범죄	비율	7.3%	71.9%	20.8%	100.0%
		수	6	310	41	357
	무고범죄	비율	1.7%	86.8%	11.5%	100.0%
		수	6	252	92	350
	전체	비율	1.7%	72.0%	26.3%	100.0%
		수	1,968	1,722	480	4,170
살인범죄	비율	47.2%	41.3%	11.5%	100.0%	
	수	736	0	0	736	
뇌물범죄	비율	100.0%	0.0%	0.0%	100.0%	
	수	548	512	15	1,075	
성범죄	비율	51.0%	47.6%	1.4%	100.0%	
	수	3,294	366	269	3,929	
강도범죄	비율	83.8%	9.3%	6.8%	100.0%	
	수	1,421	2	0	1,423	
횡령·배임범죄	비율	99.9%	0.1%	0.0%	100.0%	
	수	719	4,437	1,097	6,253	
위증범죄	비율	11.5%	71.0%	17.5%	100.0%	
	수	41	1,272	192	1,505	
2010년	위증범죄	비율	2.7%	84.5%	12.8%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무고범죄	수	45	1,311	339	1,695	
		비율	2.7%	77.3%	20.0%	100.0%	
	전체	수	6,804	7,900	1,912	16,616	
		비율	40.9%	47.5%	11.5%	100.0%	
2011년	살인범죄	수	767	0	0	767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범죄	수	652	261	18	931	
		비율	70.0%	28.0%	1.9%	100.0%	
	성범죄	수	3,558	403	299	4,260	
		비율	83.5%	9.5%	7.0%	100.0%	
	강도범죄	수	1,354	0	0	1,354	
		비율	100.0%	0.0%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1,060	4,183	984	6,227	
		비율	17.0%	67.2%	15.8%	100.0%	
	위증범죄	수	20	1,064	233	1,317	
		비율	1.5%	80.8%	17.7%	100.0%	
	무고범죄	수	89	1,287	360	1,736	
		비율	5.1%	74.1%	20.7%	100.0%	
	전체	수	7,500	7,198	1,894	16,592	
		비율	45.2%	43.4%	11.4%	100.0%	
	2012년 상반기	살인범죄	수	338	1	0	339
			비율	99.7%	0.3%	0.0%	100.0%
뇌물범죄		수	322	111	10	443	
		비율	72.7%	25.1%	2.3%	100.0%	
성범죄		수	1,868	328	300	2,496	
		비율	74.8%	13.1%	12.0%	100.0%	
강도범죄		수	681	4	0	685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횡령·배임범죄	비율	99.4%	0.6%	0.0%	100.0%
		수	498	1,662	566	2,726
		비율	18.3%	61.0%	20.8%	100.0%
	위증범죄	수	12	440	143	595
		비율	2.0%	73.9%	24.0%	100.0%
	무고범죄	수	17	513	173	703
		비율	2.4%	73.0%	24.6%	100.0%
	전체	수	3,736	3,059	1,192	7,987
		비율	46.8%	38.3%	14.9%	100.0%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1년 하반기	약취·유인범죄	수	9	1	0	10
		비율	90.0%	10.0%	0.0%	100.0%
	사기범죄	수	334	4,501	1,686	6,521
		비율	5.1%	69.0%	25.9%	100.0%
	절도범죄	수	371	2,685	581	3,637
		비율	10.2%	73.8%	16.0%	100.0%
	공문서범죄	수	18	166	101	285
		비율	6.3%	58.2%	35.4%	100.0%
	사문서범죄	수	15	276	117	408
		비율	3.7%	67.6%	28.7%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93	1,151	694	1,938
		비율	4.8%	59.4%	35.8%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식품·보건범죄	수	17	172	628	817
		비율	2.1%	21.1%	76.9%	100.0%
	마약범죄	수	125	1,099	33	1,257
		비율	9.9%	87.4%	2.6%	100.0%
	전체	수	982	10,051	3,840	14,873
		비율	6.6%	67.6%	25.8%	100.0%
2012년 상반기	약취·유인범죄	수	38	14	0	52
		비율	73.1%	26.9%	0.0%	100.0%
	사기범죄	수	781	9,347	3,477	13,605
		비율	5.7%	68.7%	25.6%	100.0%
	절도범죄	수	601	4,406	1,175	6,182
		비율	9.7%	71.3%	19.0%	100.0%
	공문서범죄	수	103	387	234	724
		비율	14.2%	53.5%	32.3%	100.0%
	사문서범죄	수	44	448	306	798
		비율	5.5%	56.1%	38.3%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200	1,324	1,383	2,907
		비율	6.9%	45.5%	47.6%	100.0%
	식품·보건범죄	수	31	355	1,114	1,500
		비율	2.1%	23.7%	74.3%	100.0%
	마약범죄	수	261	1,389	29	1,679
		비율	15.5%	82.7%	1.7%	100.0%
	전체	수	2,059	17,670	7,718	27,447
		비율	7.5%	64.4%	28.1%	100.0%

나.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살인 범죄	강간살인	0	0	0	1	1
	강도살인	0	0	8	8	16
	강도살인미수	0	0	11	2	13
	살인	105	315	270	124	814
	살인미수	170	382	435	165	1,15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0	6	1	7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	0	0	0	1	1
	존속살해	7	26	26	23	82
	존속살해미수	4	13	11	12	40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단체등의살인)	0	0	0	2	2
	전체	286	736	767	339	2,128
뇌물 범죄	뇌물공여	59	558	447	185	1,249
	뇌물수수	46	280	282	170	778
	부정처사후수뢰	2	26	18	3	49
	수뢰후부정처사	2	27	20	4	53
	제3자뇌물교부	3	50	20	5	78
	제3자뇌물취득	4	32	31	14	81
	특가법(뇌물)	4	102	113	62	281
	전체	120	1,075	931	443	2,569
성 범죄	강간	38	128	127	91	384
	강간살인	1	0	2	0	3
	강간상해	49	175	181	76	481
	강간치사	0	2	0	1	3
	강간치상	104	313	256	101	774
	강도강간	4	24	10	8	46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강제추행	127	548	655	553	1,883
	강제추행상해	11	39	47	17	114
	강제추행치상	40	115	112	48	315
	미성년자의제강간	3	16	12	5	36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4	1	3	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9	19	16	5	4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24	302	92	21	539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4	3	1	0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0	83	14	4	141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50	90	5	0	145
	성폭력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0	0	1	0	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7	82	30	11	150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11	18	4	4	37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15	168	31	8	32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6	57	17	5	10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3	69	26	10	128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	7	4	1	14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	10	10	2	26
	성폭력범죄(특수강간)	91	165	45	23	324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60	132	38	18	248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1	21	3	0	35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	54	12	2	75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0	0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154	307	165	626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0	0	15	1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1	1	0	2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40	110	52	20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0	2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59	105	51	215
	성폭력범죄특례법(미성년자강간등)	0	0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0	0	0	8	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0	0	0	6	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27	109	64	200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9	14	8	3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137	246	88	47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0	0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21	55	34	110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26	67	32	12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7	6	1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4	13	8	2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56	228	123	40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45	112	52	20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7	30	32	6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17	62	49	12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0	5	1	6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419	866	546	1,83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0	0	0	7	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0	0	0	1	1
	준강간	7	56	49	38	150
	준강간치상	2	10	10	7	29
	준강제추행	32	104	92	80	308
	준강제추행상해	0	0	0	2	2
	준강제추행치사	0	0	1	0	1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준강제추행치상	1	3	4	3	11
	청소년성보호법	1	0	0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0	4	0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92	88	5	0	185
	특가법(강도강간)	0	0	0	1	1
	전체	1,116	3,929	4,260	2,496	11,801
강도 범죄	강도	66	159	136	67	428
	강도살인	10	33	20	0	63
	강도상해	238	570	548	250	1,606
	강도치사	1	4	9	3	17
	강도치상	15	54	45	19	133
	준강도	43	92	94	26	255
	준특수강도	8	14	9	5	36
	특가법(강도)	4	12	10	8	34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9	15	8	34
	특강법(특수강도)	0	1	0	0	1
	특수강도	177	475	468	299	1,419
	전체	564	1,423	1,354	685	4,026
횡령· 배임 범죄	배임	111	513	464	207	1,295
	업무상배임	71	439	484	221	1,215
	업무상횡령	602	2,484	2,356	1,032	6,474
	특경가법(배임)	27	190	254	141	612
	특경가법(횡령)	33	334	492	261	1,120
	횡령	533	2,293	2,177	864	5,867
	전체	1,377	6,253	6,227	2,726	16,583
위증 범죄	모해위증	3	14	18	8	43
	위증	296	1,260	1,098	516	3,170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체
죄	위증교사	58	231	201	71	561
	전체	357	1,505	1,317	595	3,774
무고 범죄	무고	349	1,687	1,729	698	4,463
	무고교사	0	0	0	1	1
	특가법(무고)	1	8	7	4	20
	전체	350	1,695	1,736	703	4,484
총계		4,170	16,616	16,592	7,987	45,365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전체
약취·유인 범죄	간음약취	0	1	1
	미성년자약취	0	11	11
	미성년자유인	2	6	8
	영리약취	0	1	1
	영리유인	0	1	1
	특가법(약취·유인)	2	5	7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6	27	33
	전체	10	52	62
사기 범죄	사기	6,284	13,030	19,314
	상습사기	36	65	101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0	1	1
	준사기	4	15	19
	컴퓨터등사용사기	74	141	215
	특경가법(사기)	123	353	476
	전체	6,521	13,605	20,126
문화재보호법위반 산림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4	11	15
	산림보호법위반	6	18	24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전체
절 도 범 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8	85	113
	상습절도	9	6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43	256	399
	야간방실침입절도	17	24	41
	야간선박침입절도	0	1	1
	야간주거침입절도	128	194	322
	절도	1,742	2,893	4,635
	특가법(산림)	10	10	20
	특가법(상습절도)	0	2	2
	특가법(절도)	689	1,042	1,731
	특수절도	861	1,640	2,501
	전체	3,637	6,182	9,819
	공 문 서 범 죄	공기호부정사용	0	2
공문서변조		16	33	49
공문서부정행사		56	154	210
공문서위조		63	129	192
공문서위조교사		0	1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00	293	393
공전자기록등위작		3	2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2	68	90
면허증불실기재		0	4	4
변조공문서행사		2	1	3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0	2	2
불실기재여권행사		0	1	1
위조공문서행사		5	16	21
허위공문서작성		18	17	35
허위공문서행사		0	1	1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전체
	전체	285	724	1,009
사 문 서 범 죄	변조사문서행사	1	2	3
	사문서변조	12	38	50
	사문서부정행사	3	2	5
	사문서위조	351	703	1,054
	사문서위조행사	1	0	1
	사전자기록등변작	0	2	2
	사전자기록등위변작	0	2	2
	사전자기록등위작	12	4	16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0	1
	위조사문서행사	15	22	37
	위조사서명행사	0	2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8	19	27
	허위진단서작성	4	2	6
	전체	408	798	1,206
	공 무 집 행 방 해 범 죄	공무집행방해	1,530	2,255
공용건조물파괴		2	0	2
공용물건무효		1	0	1
공용물건손상		201	315	516
공용물건은닉		1	0	1
공용서류무효		2	5	7
공용서류손상		16	20	36
공용서류은닉		3	0	3
공용전자기록등손상		0	1	1
위계공무집행방해		36	92	128
특수공무방해치상		0	1	1
특수공무집행방해		88	131	219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전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53	81	134
	특수공용물건손상	5	6	11
	전체	1,938	2,907	4,845
식품·보건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5	32	47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6	3	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71	243	4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80	130	2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0	1	1
	식품위생법위반	277	613	890
	약사법위반	77	154	231
	의료법위반	171	283	454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2	0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0	32	42
	화장품법위반	8	9	17
	전체	817	1,500	2,317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62	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23	10	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940	1,285	2,22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32	170	302
특가법(마약)		0	1	1
특가법(향정)		0	7	7
전체		1,257	1,679	2,936
총계		14,873	27,447	42,320

II. 조세, 방화,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결과 분석

1. 개요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은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인 조세, 방화, 공갈범죄에 대하여 판결문 및 형사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 방화, 공갈범죄의 접수처리 현황, 형량분포, 양형인자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

2. 분석 대상

- 2006. 1. 1. ~ 2011. 12. 31. 사이에 선고된 조세, 방화, 공갈범죄의 단일범 및 동종경합범 사건(1심) 3,785건

3. 분석의 의의

- 양형기준 연구시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자료를 제공
 - 조세, 방화, 공갈범죄의 범죄유형 세분화, 범죄유형별 기준형량,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 추출, 양형인자별 가중치 등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통계자료 추출

4. 분석 내용

- 별책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Ⅲ(조세, 방화, 공갈범죄)」 기재와 같음

Ⅲ. 위원장 국회 현황 보고

1. 개요

- 2012. 7. 27. 1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09회(임시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양형위원회 현황’을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함

2. 주요 보고내용

- 양형위원회 설립
- 양형위원회 현황
- 3기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 향후 주요 추진 업무

IV.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소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소위원회 회의	제22차	2012. 8. 13. 11:30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57차	2012. 7. 30. 16:00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결과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검토

V.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결과 보고

1. 공청회 개요

- 일시 : 2012. 7. 16.(월) 16:00~18:0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주제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 참석자 : 총 100여 명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양형위원 : 김기정, 여상훈, 이광수, 이연주, 하태훈, 임성근(상임위원)
 - 전문위원 : 구회근(수석전문위원), 범현, 조석영, 최형표, 함석천
 - 일반 시민, 기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사회자 : 임성근 상임위원
- 발표자 : 구회근 수석전문위원
- 지정토론자
 - 권석천(중앙일보 논설위원)
 -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 노동일(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황정근(변호사)

VI.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양형기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양형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의결된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관보 게재를 통하여 공개하였음을 보고

2. 추진 경과

- 2012. 6. 18. 양형위원회 제42차 회의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결
- 2012. 6. 19. ~ 25. : 양형기준 관보 게재용 파일로 편집
- 2012. 6. 25. :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 의뢰 공문 시행
- 2012. 6. 28.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관보 게재(<http://gwanbo.korea.go.kr>)
- 2012. 7. 27. : 일부 오기로 인한 정정관보 게재
- 관보 게재용 양형기준은 별첨1 자료와 같음

Ⅶ.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에 따라 국회, 대법원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2012. 8. 6. 기준)

가. 대상 기준안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42차(2012. 6. 18.) 회의에서 의결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나. 조회 기간 : 2012. 6. 20. ~ 7. 20.

다. 회신 기관

- 28개의 조회 대상 기관 중 8개 기관이 회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한법무사협회

라. 회신자료

- 별첨2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2.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회신의견 종합

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구분이 모호함
 -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는 특별양형인자의 행위로 규율되고 있고, ‘소극 가담’은 일반양형인자의 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는 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보이지 않음

-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이라는 감경요소를 적시하고 있는 바, ‘우연한 기회’라는 것은 심히 불확정적인 개념으로서 ‘우연한 기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의심스러움. 이러한 양형인자가 나중에 선거법 재판에서 여당에는 유리하게, 야당에는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음
- ‘농아자’를 특별양형인자의 행위자 감경요소로 보는 것은 부당
 - ▶ 농아자라 하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선거범죄에서 농아자인 경우를 감경해야 할 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 필요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에서 감경요소인 ‘상대방이 소수 또는 전과성이 낮은 경우’와 가중요소인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과성이 매우 높은 경우’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
 - ▶ 상대방이 소수더라도 그 소수에 의해 다수에게 퍼질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가중요소의 경우에도 다수 또는 전과성이 높은지도 상대적인 문제라 보여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여당과 야당에 대하여 편파적일 수도 있음

나. 대법원

○ 유형분류에 대한 의견

-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 선거범죄 중 대표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을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등으로 크게 나누고, 다시 위 유형의 범죄를 3 내지 5 유형의 범죄로 세분하여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의 양형기준을 제시한 것은 타당해 보임

- 선거범죄는 그 범죄 태양이 복잡·다양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 빈번하여 구성요건의 유형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제시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은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조문 체계와 법정형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도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유형구분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유형 구분이 너무 세분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기준안은 유형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기계적인 유형 구분으로 보일 우려가 있음
 - 특히 제3유형과 제4유형은 실질적으로 법정형이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제3유형은 징역형이 7년 이하이고, 제4유형도 기본적으로 7년 이하 징역인데, 다만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 그 구성요건이 상이할 뿐 공직선거법상 위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에도 제4유형을 제3유형과 구별하여 가중된 단계로 설정하고 있음
 - 같은 유형구간으로 묶거나 설사 제시된 기준안과 같이 유형을 구분하더라도 형량은 지금과 같은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기본적 형량범위 설정 방식
 - ▶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반드시 명확할 수 없고, 단지 개수로 평가될 수 없는 양형인자의 질적인 크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안에서의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간별로 형량범위를 중첩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임.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감경, 기본, 가중 영역 사이에 형량범위의 중첩 구간을 둔 것은 적절함

- 제시된 양형기준안은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실효성과 당선 유무효 여부
 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다른 양형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벌금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위와 같은 양형기준안의 기
 본 취지에 공감함
 - ▶ 다만 일부 형량범위 구간의 경우 오로지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이
 선택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실제 사안에서 구체
 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확보하는 데 부당한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
 가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예컨대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의 경우 제1 내지 5 유형에 있
 어 각 유형별로 오로지 감경영역에서만 벌금형이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감경인자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 제시된 양형기준안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엄단 필요성 등에 근
 거하여 통계분석상 나타나는 종전 양형실무상의 형량범위를 대폭 상
 향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설정방식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 다만 선거범죄 관련 양형실무에 대한 비판의 중점은 형량이 일률
 적으로 너무 낮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일관되지 못
 한 양형실무에 대한 불만에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함. 엄정한 양형기준의 수립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다만 그로 인
 하여 양형의 적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영역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 한편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형
 량 차별화가 필요
 - 제시된 기준안은 ‘후보자비방’을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와 구별하여 유형구분을 한 다음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그 형량 차이를 보다 뚜렷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 사이의 적극적 의견 표명은 흔히 비방적 성

향을 띤 공격을 동반하고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민주적인 선거에 있어 불가피하며, 검증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다만 그러한 공격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시된 기준안과 같이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함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보다 오히려 높은데도, 제시된 기준안에 따르면 형량이 역전되어 있음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선거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양형인자의 차별화 내지 평가가 좀 더 검토될 필요도 있어 보임
 - ▶ 선거조직 내 지위(핵심적 참모의 위치에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 실행행위자인지, 아니면 우연히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되었는지)에 따른 영역의 구분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재판과정에서 선거범죄는 피고인(내부자)의 적극적 진술이 없이는 실체의 규명이 난해하므로,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을 기초로 자신의 범행과 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진술을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을 특별양형인자의 행위자요소로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됨
- 특별양형인자 중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의 다과”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이 ‘개개인에게 제공된 수액’인지 ‘총액’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공선법이 기부행위를 제한기간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 이유가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에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

물, 정책 등을 평가 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 청산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판결, 2009. 4. 23. 선고 2009도834판결)

▶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규정은 그 기간과 무관하게 제113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별도의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판결), 우리나라 선거제도, 선거문화 풍토의 현실상 공선법 제113조에 위반한 기부행위로 인하여 실제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부행위의 시점’과 ‘선거일과의 근접성 여부’ 및 ‘제공, 기부된 금품의 다과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공선법상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죄질 및 양형 판단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에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에 대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서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다만, 위 유형의 감경요소로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만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기부행위 시점이 선거일과 시간적 차이가 큰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기부행위와 선거일의 간격이 매우 커서 사실상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 내지 선거운동의 목적과 관련성이 희박한 경우’를 감경요소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관련

▶ 특별양형인자로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을 가중요소로 하였는데, 그것을 가중요소로 하는 것

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음. 위와 같은 선거관계인이 관여되지 않은 기부행위가 가능한지가 의문이고, 위 가중요소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지휘자와 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위 사항을 모두 가중요소로 할 경우 기부행위는 웬만하면 모두 가중요소가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가중요소 없는 경우를 상정하기 매우 어려워 보임)

-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를 가중적 양형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를 가중요소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적절성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를 가중요소로 보더라도 ‘일반 양형인자’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의 유형과 같이 상대방의 해명이나 반론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특별 양형인자로서 평가될 수 있다는 점과 비교 필요)
-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소극 가담’만이 일반감경인자에 포함되어 있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이 특별감경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위 범죄유형의 경우에도 위 인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이상,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관련
 - ▶ 위 양형인자가 적용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경합범에 해당되는 경우가 보통일 것인데 위와 같은 특별가중인자를 개별 행위마다 적용하여 가중형량범위로 처리한 다음 다시 다수범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형량을 가중한다면 동일한 양형인자의 이중 평가 문제가 대두될 우려는 없는지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대한 의견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

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이와 같은 특별규정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 또는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 등을 말함

다. 법무부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모든 범죄유형에 있어 가중 구간의 상한(선고형의 상한)이 법정형의 상한에 미치지 못함
 - ▶ 가중적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정형의 상한에는 미치지 못함
 - ▶ 선거범죄는 동일한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 사이에도 죄질, 규모,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기준상으로도 법정형 상한 선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가중적 형량범위의 상한만을 1/2 가중하고 있는바, 하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가중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 가중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가중적 형량범위의 하한도 1/2 가중 필요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다액인)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소수)이거나 전과성이 매우 높은(낮은) 경우’,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등 핵심적인 양형인자에 대한 구체화 필요

- ▶ 현행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기준은, 금품선거사범의 금액(10개 구간으로 구분), 흑색선전사범의 선전물 수량 또는 게시 횟수(7개 구간으로 구분), 선거일 임박정도(1년 이전 행위, 6개월 이전 행위/선거운동 기간중, 선거일전 5일 이내) 등 각 범죄유형별 특징적 양형인자를 수치화하고 가중·감경 정도 특정되어 있음
- 매수 및 이해유도 또는 기부행위 등과 같은 금품선거사범에 있어 수수 금액과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에 있어 전파성은 결정적 양형인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화할 필요성 있음
- ▶ 극히 경미한 금액 등 금액 기준에 있어 물가지표와 연동한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전파성에 있어 선거인 대비 전파 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도 관점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여 기준으로서의 의미 퇴색
- 기부행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물, 교통 편의 등 금전 이외의 물품이나 향응·편의제공 사례에 관해 현금, 유가증권 등 제공사례에 비해 감경요소로 보거나, ‘극히 경미한(다액인) 경우’ 판단의 기준을 달리할 것인지도 검토 필요

○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의견

-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벌금형에 대해서도 당선무효나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등 효과가 발생하고,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공공성이 강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과 개전의 정상만으로 선고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 ▶ 선거범죄에 대한 선고유예는 자칫 재판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

- 따라서,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뿐 아니라 선고유예 사유나 기준도 마련함이 상당

라. 대한변호사협회

○ 선거범죄 양형기준 일반에 대한 의견

- 자유형과 벌금형 사이의 형종 선택 기준 필요
 - ▶ 다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경우와 달리 자유형의 선고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선거범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양형기준과 달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정하면서 형종 선택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문제임
 - ▶ 물론 지금까지의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실무가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다른 범죄에 비하여 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이 매우 낮아서 종래의 양형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는 자유형과 벌금형 사이의 형종선택 기준을 수립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새로 수립하는 양형기준은 종래의 양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경험적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 앞으로의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범적 측면에서의 양형기준 수립이 요청됨
- 당선무효의 형은 기본구간에 두는 것이 타당
 - ▶ 양형구간의 획정과 관련하여 현재의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경우에는 감경구간에 해당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양형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당선무효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양형구간을 정하는 것은 양형기준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 선거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당선무효 여부이고 그 다

음이 자유형과 벌금형의 형종 선택 문제라고 한다면, 선거범죄의 기본양형구간에 당선무효의 형이 위치하도록 하고 가중영역에는 자유형과 벌금형의 형종 선택구간이, 감경구간에는 당선무효에 이르지 않는 양형구간이 분포하도록 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

- 양형기준의 감경, 기본, 가중영역에 법정형을 고려할 필요 있음
 - ▶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경우는 당선인에 대한 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5년 이하의 징역)에 국한되고, 나머지 유형의 법정형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선택형으로 되어 있음에도 양형기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벌금형만 두거나 징역형만 두는 경우가 많아 법정형의 의도가 몰각
 - ▶ 예컨대 “매수 및 이해유도”의 유형에서 감경형은 벌금형이 가능하고 기본형과 가중형에 벌금형이 불가하여 법정형을 무시하고 있고 기본형에 벌금형을 선택해야 감경형에서 벌금을 감경할 수 있음에도 기본형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감경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 발생
 - ▶ 기본형과 가중형에도 벌금형을 두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법정형의 취지에 부합하고 양형인자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양형기준을 높이 정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적정한 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의 다과’에 따른 특별감경요소와 특별가중요소의 균형 필요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본다면, “극히 다액”인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경미”한 경우는 일반감경인자로 보는 것이 균형에 맞음. 만일 양형기준안에서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

로 취급할 경우에는 “다액”인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취급하여야 양형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형평이 유지됨

- 현재의 양형기준은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취급하고, “경미”한 경우는 아예 양형인자로 취급하지도 않고 있는 반면,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는 그 다액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하여 양형요소 사이에 균형 상실
- 가중인자와 감경인자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면 1)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취급하는 현재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취급하도록 수정하거나, 2) 반대로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일반가중요소로 유지하면서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를 특별가중요소가 아닌 일반가중요소로 취급하도록 수정함이 타당
- ▶ 특별감경인자인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에서 “실비보상”이나 “위로적 차원”이라는 제한을 삭제함이 타당
-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의 하나로 거시한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는 전후 모순된 양형요소를 하나의 양형요소로 거시함으로써 사실상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문제점이 있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삼고 있는 양형기준안에 비추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는 그 “경미함” 자체로 감경요소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지 그 경미함에 더하여 실비보상이나 위로적 차원이라는 제한을 부가할 이유가 없음
- 선거관련 “매수죄”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 대가로 수수하는 금액이 실비보상 차원을 뛰어넘는 금액이라야 “매수”의 성공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기 때문에 단지 실비보상 차원의 경미한 금액에 그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움.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위로적 차원에서 건네는 금품 역시 경미한 금액에 그치는 경우를 상정하기 불가능

- 이와 달리 단지 “경미”한 금품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금품이 “다액”인 경우가 가중요소인 점을 고려하여 그 자체로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야 함
 - 그런데 경미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위와 같이 “실비보상이나 위로적 차원”이라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부가하게 된다면 아무리 경미한 금품을 제공하였더라도 사실상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없게 만들 우려가 있음
 - 이미 감경요소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정의하고 있는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에 있어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이라는 제한을 별도로 부가하여 이중적으로 실익을 줄 필요가 없고, 별도의 감경요소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각 행위를 일반화하여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만으로 확정하여 양형요소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 ▶ “동종 전과 없음”을 일반감경요소로 추가하거나 “동종 전과”를 일반가중요소로 고려할 필요 있음
 - “동종 전과”를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면, 이와의 균형상 “동종 전과 없음”을 적어도 일반감경요소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중요소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특별가중요소, “10년 이내의 이종 누범의 경우”에는 일반가중요소로 취급하는 반면, 감경요소에 있어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단 하나의 요소만이 감경요소로 고려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함
 - 한편으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일반감경요소로 고려되는 것과의 균형상 “동종 전과”를 일반가중요소로 고려하는 방안도 가능
-

-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는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는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는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있어서 경고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비난을 가하여야 할 범죄행위로 보임
- ▶ 특별가중요소인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에 대한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는 삭제함이 타당
 - 매수 또는 이해유도를 위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선거범죄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수수하는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다액에 달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지 의문임
 - 사회통념상 상당한 다액의 금품 또는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오히려 피고인측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요소로 보임
 - 그렇다면 양형기준안에서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하여야 하는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란 단지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경우”로 예시하면 족하고 제한적 설명문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의 다과’에 따른 특별감경요소와 특별가중요소의 균형 필요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본

다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다액”인 경우가 특별가중인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양형기준안과 같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한다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경미”한 경우를 감경인자로 취급(균형상으로는 특별감경인자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적어도 일반감경인자로라도 취급)할 필요가 있음

- ▶ “동종 전과 없음”을 일반감경요소로 추가하거나 “동종 전과”를 일반가중요소로 고려할 필요 있음
 - “동종 전과”를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면,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동종 전과 없음”을 특별감경요소 내지 적어도 일반감경요소의 하나로 고려하거나 “동종 전과”를 특별가중요소가 아닌 일반가중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는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동종 전과 없음”을 일반감경요소로 추가하거나 “동종 전과”를 일반가중요소로 고려할 필요 있음
 - “동종 전과”를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면,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동종 전과 없음”을 특별감경요소 내지 적어도 일반감경요소의 하나로 고려하거나 “동종 전과”를 특별가중요소가 아닌 일반가중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는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 특별양형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추상적이고 다른 양형요소와 중첩될 여지가 있어 수정함이 타당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의 특별가중요소로 들어가 있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그 내용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비록 설명문에 의하여 보충하더라도 지나치게 자의적으

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다란 요소이므로 이를 배제하거나 여타 특별가중요소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에 그칠 수 있는 요소들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포섭시키는 방법으로 특별가중요소를 수정함이 타당

○ 다른 특별가중요소 중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또는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는 실제에 있어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뚜렷하게 구별하기 어렵고,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와 중첩될 여지 있음

○ 이러한 중첩적인 양형요소들을 하나의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별개의 독립한 복수의 가중요소 그것도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를 범한 경우에는 거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양형만 허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 그러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양형요소로 고려하고자 한다면 이와 중첩될 수 있는 다른 독립한 양형요소들을 이에 흡수시켜 하나의 양형요소로 체계화하고 해당 양형요소는 설명문에 예시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를 다른 양형요소들과 중첩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유형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는 일반가중요소가 아닌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의견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는 주요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

▶ 선거인 등에 대한 금품제공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금품제공죄(같은조 제2항),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 제공죄(같은조 제3항)를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하면서,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 규정되어 있는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공직선거법 제233조)”를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

- ▶ 금품이나 이익의 다액을 부정적 요소로 고려한다면 “경미함”만을 긍정적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여기에 “극히” 경미한 경우나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이라는 부가적 요소는 삭제함이 타당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1. 매수 및 이해유도’ 관련

-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기본형량 구간을 ‘ - 8월, 50만 원 - 300만 원’에서 ‘ - 10월, 100만 원 -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필요

- 최근 당내경선 관련 매수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매수행위라는 본질은 당내경선이라 하여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일반매수죄와 동일하게 처벌 필요

-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관련

-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기본형량 구간을 ‘70만 원 - 200만 원’에서 ‘ - 6월, 7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필요

- 제2유형에는 단순한 선거운동방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죄질이 나쁜 범죄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이 필요함

- ▶ 불법 사조직 유사기관 설치·운영 유형 신설

-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운영은 범죄자체가 조직적이고 규모도 크며 다른 범죄도 다수 수반하는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처벌기준

대폭 강화 필요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에 대한 권고기준 준용하여 형종 및 형량 권고기준 별도 제시 필요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관련

- ▶ 일반양형인자의 행위가중요소인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은 후보자 등의 범행을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보다 더욱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함이 타당
- ▶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진실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를 추가함이 타당

- 선거에 출마한 자는 자신을 공공의 비판대 위에 세운 것이고, 선거운동과정에서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강한 자유의 보장이 필요

바.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 유형분류에 대한 의견

-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의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행위는 일반 매수행위 수준으로 강화함이 타당

- ▶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정당정치 또는 정당 내 민주주의의 발전이 전제되는 것이며, 큰 틀에서 볼 때 당내경선 역시 공직선거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당내경선의 중요성,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 또한, 당내경선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국민이 경험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당내경선 관련 매수를 일반 매수와 차별화하기 보다는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양형기준을 일반 매수의

양형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 중 제1유형 후보자비방 형량은 적절함
 - ▶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선거는 상대방 후보와의 정책경쟁, 후보자의 자질 검증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그와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후보자비방임
 - ▶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기준을 부당히 강화한다면, 선거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켜 그 결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음
-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 중 제2, 3유형의 형량 강화 필요
 -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행위는 ‘당선’ 또는 ‘낙선’이라는 목적의식과 공표하는 사실의 ‘허위성’을 고려하였을 때 양형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자신이 당선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로 인하여 선거가 혼탁하게 되고, 국민의 표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는 수없이 있어 왔음
 - ▶ 국민의 진정하고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선거에서 부당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당연히 엄벌이 필요
-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유형 관련
 - ▶ 벌금형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형성되었는데,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였을 때, 이번 기준안은 벌금형을 기본으로 하되, 형의 가중요소가 존재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형분류에 대한 의견

-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의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에 대한 재고 필요
 - ▶ 당내경선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국민 주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인 선거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현 양형기준안에 의하면 당내경선에 대하여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정도가 약하다” 는 이유로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보다 약한 유형인 제1유형으로 포섭하고 있음
 - ▶ 당내경선도 본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의 특별감경요소 중 행위인자인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종전의 업무담당자나 주위의 다른 업무담당자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부주의하게 따르다 범행에 이르게 된 행위’는 일반양형인자로 포섭함이 타당
 - ▶ 관행이라는 이유가 하나의 묵인된 용서로 오해된다면 현재 선거에 배어 있는 구태의 청산은 요원할 것임
 - ▶ 물론, 복잡다기한 정치적 활동의 불가피성과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양관점을 절충하는 선에서 당해 양형인자를 특별 감경양형인자로 평가하기 보다는 일반양형인자로 포섭되는 것이 타당
-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의 특별감경요소 중 행위인자인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는 일반감경인자로 포섭함이 타당
 - ▶ 당내경선 또한 국민주권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

하고 있으므로 당내경선에서의 불법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일반감경인자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

-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의 일반가중인자 중 행위자/기타인자인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 양형위원회 제42차 회의 자료집에서는 후보자측의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그 신뢰가 낮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일반가중인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선거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 대표자로 선량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고 봄
 - ▶ 후보자의 책임감을 고양하기 위해서도 후보자 측의 범행에 대하여 특별가중양형인자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 기타 의견

- 사위 선거인 명부 등재·허위 부재자 신고·허위 서명 날인, 사위 방법 투표, 투표수 증감죄는 선거관련 중대범죄이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타당

아. 대한법무사협회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음

VIII. 선거범죄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양형기준 책자 발간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12. 8. 20. 양형위원회 제43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12. 8. 하순(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12. 9. 초순(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IX. 양형위원, 전문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양형위원 개임

- 2012. 7. 18.자로 백종수 위원 사임서 제출
- 2012. 8. 10.자로 이건리(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위촉

2. 신임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12. 8. 13.(월) 11:00
 - 장 소 : 대법원 본관 11층 소접견실
 - 참석범위 : 대법원장, 비서실장, 상임위원
 - 위촉대상자 :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 신임 양형위원의 자세한 약력은 <별지>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3. 전문위원 개임

가. 개요

- 2012. 7. 26.자로 심재철 전문위원 사임서 제출
- 2012. 7. 17.자로 최진녕 전문위원 임기 만료
- 2012. 7. 24.자로 이수정 전문위원 임기 만료
- 2012. 8. 7.자로 안효질, 정순섭 전문위원 임기 만료
- 2012. 8. 19.자로 강우예, 김혜정, 범현 전문위원 임기 만료
-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 관련규정과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나.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분위기 쇄신
 - 종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3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전문위원 선정 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및 직역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다. 위촉 내역

(1) 연임 위촉

-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2012. 7. 18.자 연임)
- 이수정 경기대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2012. 7. 25.자 연임)
- 강우예 한국해양대학교 조교수(2012. 8. 20.자 연임)
-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2. 8. 20.자 연임)
- 범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2012. 8. 20.자 연임)

(2) 신규 위촉

○ 주용완 대검찰청 연구관을 전문위원으로 위촉(2012. 8. 20.자)

※ 검사인 심재철 전문위원의 후임자인 점을 고려함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약력은 <별지>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라. 전문위원 구성

구분	팀장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교수	교수
수석 전문위원	구회근						
총괄팀	구회근	함석천	주용완				
제1팀	함석천	/	조석영	최진녕	강우예	이수정	이진국
제2팀	주용완	최형표	/	범 현	김혜정	이종교	이주원

4.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12. 8. 20.(월) 16: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주용완 대검찰청 연구관

X. 2012년도 양형위원회 제2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1. 개요

- 2012. 7. 23.(월) 10:30~12:00 대법원 404호 회의실에서 양형위원회 제2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2. 참석 현황

-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 전체 자문위원 13인 중 8인 참석
심희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현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오영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권태선(한겨레신문 편집인), 박보균(중앙일보 대기자), 이배용(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신종원(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차경애(한국 YWCA연합회 회장)

3. 회의 내용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 자문의견 청취

4. 자문의견 요약

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중 당내경선 관련 매수 부분

(가) 쟁점

- 양형기준안은 법정형 차이를 고려하여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형량 범위를 본 선거에서의 일반매수보다 낮게 설정하였는바, 당내경선의 영향력 고려할 때 일반매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

(나) 자문의견

- 양형기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박보균, 권태선 위원)
 - 정당정치의 측면을 고려할 때 당내경선 관련 문제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화함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법정형도 낮게 규정된 것임 ⇒ 이러한 점을 반영한 양형기준안 타당
 - 경선과정에서는 후보자간의 정치적 타협에 따른 정치행위로서 일부 선거비용 보존받고 후보직 사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본 선거에서의 매수행위 등 전형적인 금권선거와는 성격이 다름
- 양형기준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배용, 신종원, 차경애 위원)
 - 법정형 차이가 존재하므로 일반매수와 동일한 형량범위를 설정할 수는 없으나, 당내경선의 영향력과 중요성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현행 양형기준안보다는 형량범위를 상향함이 타당
- 양형인자 신설 의견(오영근 위원)
 - 현행 양형기준안 유지하되, 당내경선의 승리가 곧 본 선거에서의 당선을 의미할 정도로 당내경선의 중요성과 영향력 있는 경우는 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 처벌함이 타당

(2)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중 후보자에 의한 일반매수 부분

(가) 쟁점

- 양형기준안은 '후보자에 의한 매수'의 경우 감경영역의 벌금형 하한

을 200만 원으로 설정하여 특별조정이 되어 하한이 1/2(100만 원)로 감경되는 경우에조차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함

- 이처럼 예외 없이 당선무효가 선고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나) 자문의견(일치된 의견)

- 현행 양형기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당선유효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 수정되어야 함
 - 기소가 곧 당선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검찰에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하여 기관 간 권력 균형이 유지될 수 없고, 법원은 그 반작용으로 유죄 인정에 소극적으로 될 것임
 - 18대 국회의 경우도 매우 경미한 일부 사안을 포함하여 15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큰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엄격한 양형기준이 시행되면 대규모 의원직 상실로 더 큰 혼란 우려됨
 - 양형기준을 통하여 '당선무효'와 같은 실체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양형기준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선유효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에도 반하여 부당함

(3) '후보자비방' 부분

(가) 쟁점

-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는 후보자비방 행위를 엄벌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타당한지 여부

(나) 자문의견

-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배용 위원)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을 근절하는 것은 정치 선진화, 민주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므로 후보자비방은 매우 중요한 범죄임 ⇒ 후보자비방에 해당하는 이상 엄벌이 요구됨
-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신종원 위원)
 - 후보자비방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허위사실공표와는 구별되며, 후보자는 검증 과정에서의 사실적시 통한 어느 정도의 평가 저하는

감수하고 출마한 것임 ⇒ 엄벌주의 지양하고 양형기준 완화해야 함

나. 기타 의견

- ‘농아자’를 감경인자로 배치함은 부적절(권태선 위원)
 -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를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부적절(이배용 위원)
 -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의한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을 TV,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에 의한 행위와 동일하게 전파성이 강한 것으로 취급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 불러오므로 재고해야 함(양현아, 권태선 위원)
- (예를 들어, 양형기준안에 의하면 트위터 팔로어가 많은 사람이 부주의하게 리트윗한 경우에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SNS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 있음)

5. 향후 계획

- 자문위원 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2~3회 개최(개최 시기는 위원장이 결정)
- 2012. 11. ~ 12.경 : 조세, 방화, 공갈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2년도 양형위원회 제3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예정

XI. 2011 연간보고서 발간 · 배포

1. 개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10 규정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매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연간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양형위원회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정리하고 대외 홍보에 활용하여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 2012. 3. 5. 양형위원회 제40차 회의에서 ‘2011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의 건’(의안번호 제2012-10호) 의결

2. 추진 경과

- 2012. 3. 5. : 2011년도 연간보고서 발간 계획안 의결
- 2012. 6. 하순 : 초안 완성 및 수정 작업
- 2012. 7. 중순 : 건본 제작 및 수정
- 2012. 8. 하순 : 연간보고서 제작 완료
- 2012. 9. 초순 : 국회보고 및 배부 완료

3. 제작 내역

- 발간 부수 : 1,650부
- 책자 규격 및 분량
 - 16절(1도 인쇄, 46배판)
 - 533쪽

4. 국회 보고

- 2012. 9. 초순경 국회의원 각 실 방문하여 연간보고서 인편으로 배송 예정

5. 기타 기관 배부

○ 배부원칙

- 양형기준 책자의 적절한 배포 및 관리
- 예산낭비 방지 및 활용의 극대화

○ 배부기준

- 홍보가치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기관에 우선 배부
- 필요적 이용기관과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배부
- 사법발전에 기여하거나 자료가치를 높이는 부서에 배부

○ 배부처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학회 등

XII. 2012 양형기준 책자 발간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신설된 제3기 일부 양형기준(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과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관보에 게재하는 외에 양형기준 책자의 발간을 통해 공개하였음을 보고

2. 추진 경과

- 제3기 양형기준 책자 발간 계획(안) 결재 : 2012. 6. 27.
- 초안 완성 및 견본 제작 : 2012. 7. 11.
- 교정 작업 및 인쇄 의뢰 : 2012. 7. 19.
- 배부 및 국회 보고 : 2012. 7. 26.

3. 제작 내역

- 발간 부수 : 7,500부
- 책자 규격 및 분량
 - 16절(1도 인쇄, 46배판)
 - 436쪽

4. 국회 보고

- 각 국회의원실 방문하여 양형기준 책자 인편으로 배송 완료

5. 기타 기관 배부

○ 배부원칙

- 양형기준 책자의 적정한 배포 및 관리
- 예산낭비 방지 및 활용의 극대화

○ 배부기준

- 홍보가치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기관 우선 배부
- 필요적 이용기관과 연구기관 선정 배부
- 사법발전에 기여하거나 자료가치를 높이는 부서에 배부

○ 배부처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학회 등

XII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상의 양형기준 공개는 양형기준의 대국민적 홍보와 양형기준 개선 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신설된 제3기 일부 양형기준(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과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하는 외에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완료

2. 추진 경과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의뢰 : 2012. 6. 20.(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완료 : 2012. 7. 20.

XI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 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2. 7. 17.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 개선
2	2012. 8. 3.	○ 무기수의 처우에 관한 의견 개선

- 처리결과
 - 1번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사전에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무기수의 처우문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회신

2. 서면질의 및 회신

- 서면질의 내용

순번	접수일자	질의 요지
1	2012. 5. 31.	○ 뇌물죄와 횡령 및 배임죄 양형기준 제정 당시의 양형위원회 위원 명단, 전문위원 명단,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및 공청회 결과
2	2012. 7. 17.	○ 질의인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 ○ 자신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출입이 개방된 민원인 휴게실에서 퇴거불응을 이유로 인신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
3	2012. 7. 20.	1)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는 재판에서 어떠한 법률로서 적용하는지 여부 2) 마약범죄 양형기준 중 양형인자의 정의 항목에서 '3. 중요한 수사 협조' 중에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 가능한 정도의 수사에 기여한 경우란 어떠한 경우인지 3) 특별감경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 사유가 2가지인 경우 특별감경인자를 2개 이상으로 보는지 여부 4) 일반양형인자도 감경대상인지 5) 수사협조 중 피의자가 폭행을 당하여 큰 상처를 입었을 경우 감경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6) 마약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요청하신 자료는 이미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시되어 있으니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와 같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에 이미 공개한 자료에 대하여는 민원인 개인에게 중복하여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양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사전에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신구속 여부, 범죄의 성립여부 등 구체적·개별적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

○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1), 4)번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범죄의 법정형을 법률상 가중·감경하여 처단형이 정해지면 그 처단형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참조가 되는 것이 양형인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법률상 가중·감경사유와 특별(일반)양형인자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
- 2), 3), 5)번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사전에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양형기준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여 저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
- 6)번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2011. 3. 21. 의결된 제2기 양형기준은 2011.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회신

3. 정보공개 청구 및 회신

○ 정보공개 청구

순번	접수일자	공개청구 요지
1	2012. 6. 22.	○ 마약,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권고형량, 특별감경사유 등
2	2012. 8. 2.	○ 최신 형사재판 양형기준표

○ 회신 결과

- 1번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마약 및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관보(2011. 4. 15.자/ 2012. 6. 28.자)에 게재되었고, 또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11. 5. 말 인쇄하여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되었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2012. 8. 초순경 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될 예정이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고,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를 참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

- 2번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근거,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음

[별지]

■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성 명	이 건 리 (李 建 莅)
	생년월일	1963년 6월 11일생
	출 생 지	전남 함평
	소 속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출신학교	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주 요 경 력		
○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5. - 1987.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 1990. -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 1992.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 1994. - 1996.0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 1996.08. - 1998.0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1998.08. - 2000.02.		대검찰청 연구관
○ 2000.03. - 2001.06.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 2001.06. - 2002.08.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02.08. - 2004.06.		사법연수원 교수
○ 2004.06. - 2005.04.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 2005.04. - 2006.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 2006.02. - 2007.0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 2007.03. - 2008.03.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08.03. - 2009.01.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09.01. - 2009.08.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부장검사
○ 2009.08. - 2010.07.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2010.07. - 2011.08.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1.08. - 2012.07.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2.07. -		[現]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주 용 완 (周 容 完)
	생년월일	1970년 8월 28일생
	출 생 지	경남 마산
	소 속	대검찰청 연구관
	출신학교	마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200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2002.02. - 2004.02.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 2004.02. - 2006.02.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2006.02. - 2008.07.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2008.08. - 2010.07.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 2010.08. - 2012.0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2.08. - 대검찰청 연구관 		